㈜HB저축은행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시 채권을 2025년 10월 31일이내로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 양도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. 채권양도에 따라 대상채권의 모든 원금, 이자, 비용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리도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게 이전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아울러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및 금융위원회 고시 『신용정보업감독규정』에따라 ㈜HB저축은행은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KB국민카드 주식회사에게 이전·제공할 예정이며, KB국민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법 및 규정에 따라 본 양도예정채권과 관련한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관리 · 등록하게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, 귀하께서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㈜HB저축은행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(단,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. 채무조정 요청의 절차·방법은 ㈜HB저축은행 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hbsb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본 통지서 도달 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요청이 없는 경우 아래 표시 채권이 예정대로 양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양도예정채권 명세

소멸시효 완성여부 : 여/부 **(단위 : 원)**

대출과목	고객명	KB국민카드 채권 계좌번호	최초대출원금	대출원금잔액	이자	법적절차비용	여/부
일반자금대출	문*철	0051380278	20,000,000	8,921,232	0	-	부
일반자금대출	문*철	K078986270	2,440,433	2,440,433	0	-	부
일반자금대출	하*경	K054276780	11,433,409	11,433,409	0	-	부
일반자금대출	강*아	K082070770	1,977,187	1,977,187	0	-	부
일반자금대출	강*아	0077380710	17,500,000	17,500,000	0	-	부
일반자금대출	전*경	K069730450	6,242,009	6,242,009	0	-	부
일반자금대출	안*준	0064380078	3,400,000	811,170	0	-	부
일반자금대출	안*준	0471160424	8,000,000	309,512	0	-	부
일반자금대출	김*진	K170147420	4,324,599	4,324,599	0	-	부
일반자금대출	이*석	0048380832	2,000,000	586,329	0	-	부
일반자금대출	이*석	K125669290	787,263	787,263	0	-	부
일반자금대출	이*지	K144154930	3,390,854	3,390,854	0	-	부
일반자금대출	신*아	K161349580	1,976,477	1,976,477	0	-	부
일반자금대출	최*규	K229861880	1,773,855	1,763,221	0	-	부
일반자금대출	조*욱	K380511360	1,250,623	1,250,623	0	-	부
일반자금대출	이*호	K339237690	1,533,787	1,533,787	0	-	부
일반자금대출	김*천	K682016320	8,101,400	8,101,400	0	-	부
일반자금대출	박*용	K340908210	4,915,856	4,915,856	0	-	부
일반자금대출	박*용	0019380647	8,500,000	4,170,593	0	-	부
일반자금대출	신*지	K355296980	15,462,009	15,462,009	0	-	부
일반자금대출	강*현	K359693980	1,453,546	1,453,546	0	-	부
일반자금대출	김*현	K149395160	1,890,376	1,890,376	209,061	-	부
일반자금대출	이*혁	K079308990	942,729	942,729	63,513	-	부

일반자금대출	서*수	K221321400	3,083,730	3,083,730	543,345	-	**부**
일반자금대출	고*애	K135295060	14,384,405	14,384,405	893,871	-	**부**
일반자금대출	고*애	0077380723	3,000,000	2,867,785	3,103	-	**부**
일반자금대출	고*성	K161837790	3,663,358	3,663,358	242,398	-	**부**
일반자금대출	서*휘	K306469890	19,868,976	19,868,976	4,295,940	-	**부**

* 이자, 법적절차비용 등 채권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* 우편물 일괄발송에 따라 회생채무자, 파산채무자 및 면책자에게도 본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으나, 본 통지서는 이미 내려진 회생, 파산 및 면책 관련 결정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.

*** 상기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,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습니다.

사원번호:222015/이름:김성미/부서:개인금융팀/출력시간:2025-09-29 10:05

※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▪ 채무조정 요청권

· (개요)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"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· (신청방법)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,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지점 또는 당사 콜센터(☎1670-6789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〈참고 : 채무조정 절차〉

①요청	②심사 및 결과통지	③동의	④채무조정서 작성	⑤합의
(채무자)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(금융회사)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채무자)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(금융회사)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(채무자)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※ 당사 대출 외에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▪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회생

·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·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
·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사원번호:222015/이름:김성미/부서:개인금융팀/출력시간:2025-09-29 10:05